

제19기 네오위즈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2026년 3월 27일(금) 오전 9시

2.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19기(2025.01.01~2025.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 내용 : 1주당 배당금 303원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 호 의안 : 개정 상법 반영
 - 제2-2 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 제2-3 호 의안 : 기타 정관 변경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5인, 사외이사 1인)
 - 제3-1 호 의안 : 사내이사 김승철 선임의 건
 - 제3-2 호 의안 : 사내이사 배태근 선임의 건
 - 제3-3 호 의안 : 사내이사 김상욱 선임의 건
 - 제3-4 호 의안 : 사내이사 박성준 선임의 건
 - 제3-5 호 의안 : 사내이사 이완수 선임의 건
 - 제3-6 호 의안 : 사외이사 전동진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현정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전동진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s://kind.krx.co.kr>)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1)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2)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3월 17일 9시~2026년 3월 26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3) 시스템에 공인인증 등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1) 직접 행사 : 신분증
- 2) 대리 행사 : 위임장 **[첨부7]**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7. 기타 총회 참석 안내

긴급상황 등으로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정정공시 및 재공고 등으로 즉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삼평동, 네오위즈판교타워)

주식회사 네오위즈 공동대표이사 김 승 철, 배 태 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 정관 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2-1호 개정 상법 반영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7조 (이사의 수)</p> <p>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u>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u>으로 한다.</p>	<p>제27조 (이사의 수)</p> <p>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구성 반영
<p>제29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p> <p>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u>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u>)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제29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p> <p>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사외이사 명칭 변경
<p>제30조 (이사의 보선)</p> <p><u>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보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p>	<p>제30조 (이사의 보선)</p> <p>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p>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조문 정비
<p>제37조(이사의 의무)</p> <p>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를 위하여</u>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7조(이사의 의무)</p> <p>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p> <p>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④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p>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u>사외이사</u>이어야 한다.</p> <p>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u>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p> <p>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감사위원 의결권 조항 반영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9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해임) ① 제3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9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해임) ① 제3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제2-2호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9의 6(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u>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인수 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u>	경영상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근거 마련

제2-3호 기타 정관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4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44조(이익금의 처분) <u>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u>	표준정관 반영
제45조(이익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이익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절차개선 자본시장 법 반영
제45조의2(분기배당) ① 회사는 4월 1일 0시, 7월 1일 0시, 10월 1일 0시 현재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 제2항, 제3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상법 개정 관련 부칙 정비

[첨부 2] 이사 선임의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 의 최근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승철	1977.09.22	사내이사	없음	계열회사 임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배태근	1973.07.04	사내이사	없음	계열회사 임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상욱	1968.02.12	사내이사	없음	임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성준	1975.08.20	사내이사	없음	계열회사 임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완수	1976.04.20	사내이사	없음	계열회사 임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전동진	1975.02.14	사외이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 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승철	現 (주)네오위즈 공동대표이사	2020~현재	(주)네오위즈 공동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2021~현재	(주)티앤케이팩토리 이사	
		2022~2025	(주)하이디어 이사	
		2017~2021	(주)네오위즈컴프스 대표이사	
		2014~2021	(주)네오위즈 이그나이트클랜 본부장	
		2013~2014	(주)네오위즈 모바일게임사업부 부장	
		2012~2013	(주)네오위즈인터넷 모바일게임사업부 부장	
배태근	現 (주)네오위즈 공동대표이사	2022~현재	(주)네오위즈 공동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2021~2023	(주)네오위즈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2021~2023	(주)네오위즈 기술본부 본부장	
		2018	EOSeoul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2009~2014	(주)네오위즈 인프라실장	
김상욱	現 (주)네오위즈 사내이사	2023~현재	(주)네오위즈홀딩스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2023~현재	(주)네오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2020~현재	(주)네오위즈 이사	

		2020~2022	㈜네오위즈파트너스 이사	
		2018~현재	㈜네오위즈홀딩스 이사	
		2018~현재	지온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2011~2014	㈜코스콤 상임감사	
박성준	現) ㈜네오위즈 사내이사	2024~현재	㈜네오위즈 이사	해당사항 없음
		2019~현재	㈜네오위즈 Round8 스튜디오 본부장	
		2020~2022	㈜네오위즈 사내이사	
		2016~2019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콘솔개발본부 본부장	
		2012~2015	㈜네오위즈CRS 개발이사	
		2009~2012	㈜이야소프트 개발이사	
이완수	現) ㈜네오위즈 FD사업본부 본부장	2024~현재	㈜네오위즈 이사	해당사항 없음
		2023~현재	㈜겜플리트 이사	
		2022~현재	㈜네오위즈 FD사업본부 본부장	
		2020~2021	㈜베스파 대표이사	
		2018~2020	㈜카카오게임즈 북미/유럽 COO	
		2016~2018	㈜넷마블 사업본부 본부장	
		2013~2015	㈜액토즈소프트 부사장	
전동진	現) New Tales, 고문	2025~현재	Advisor, New Tales	해당사항 없음
		2022~2024	㈜원스토어 대표이사	
		2015~2022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대표이사	
		2013~2014	Smilegate West 대표이사	
		2012~2013	NC True CEO	
		2010~2011	NC Taiwan CEO	

[첨부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현정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 와의 관계	해당법인과 의 최근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현정	1975.03.15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현정	現)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2025~현재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2022~현재	성결대학교 글로벌경영기술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2019~2021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2016~2022	성결대학교 글로벌경영기술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2014~2016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전문연구원(재무회계 및 ESG)	
		2010~2014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재무회계 및 ESG)	
		2004~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회계 및 조세, 산업육성정책)	

[첨부 4] 감사위원회 위원 전동진 선임의 건

3. 후보자 성명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 와의 관계	해당법인과 의 최근 거래내역	채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전동진	1975.02.14	사외이사	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전동진	現) New Tales, 고문	2025~현재	Advisor, New Tales	해당사항 없음
		2022~2024	(주)원스토어 대표이사	
		2015~2022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대표이사	
		2013~2014	Smilegate West 대표이사	
		2012~2013	NC True CEO	
		2010~2011	NC Taiwan CEO	

[첨부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보수총액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당기 (제20기, 2026년)	9(3)	<p>제20기(2026 회계연도) 이사 보수한도는 이사회 전원의 급여와 2025년 경영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년 보수한도와 동일한 10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p> <p>이와 별도로 네오위즈 보통주 100,000주 범위에서 성과 연동형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하며, 부여 후 2년 내 목표 주가 달성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여 및 지급의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합니다.</p>
전기 (제19기, 2025년)	9(3)	100억 (31억)

[첨부6]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정은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1) 임직원 보상

-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핵심 인력과 리더급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주식보상을 부여할 예정.
- 성과 연동형 주식 보상(RSU)으로서 도전적인 주가 및 영업이익 달성 목표를 가득조건으로 하며, 부여 후 2년 내에 행사 가능함.
- 가득조건 미달성으로 소멸되는 주식보상의 50%는 소각 예정임.
- 임직원 보상에 따른 보유, 처분 수량은 가득조건 달성 여부와 실제 처분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2)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신기술 도입

-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구조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신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업무 추진 경과 또는 처분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처분 시점은 변동 가능.

나.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1) 신규 취득 자기주식

당사는 2026년 3월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함. 취득 예정 금액은 약 60억 원, 예정 주식 수는 260,870주이며, 취득 완료 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조속히 적정 시점을 결정하여 소각할 예정임

(2) 기보유 자기주식

주식의 종류	취득방법	보유·처분 수량(주)
보통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2,062,737주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보유/처분 목적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보유개시시점 기준		처분예정시점 기준	
			보유개시시점	주식 수(주)	처분예정시점	주식 수(주)
1.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임직원 보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보통주	2026년 3월 27일	936,010	2036년 3월	-

보유/처분 목적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보유개시시점 기준		처분예정시점 기준	
			보유개시시점	주식 수(주)	처분예정시점	주식 수(주)
	내 취득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	보통주	2026년 3월 27일	33,886	2036년 3월	-
전략적 제휴 및 인수 합병, 신기술 도입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보통주	2026년 3월 27일	1,092,841	2031년 3월	-
2.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잔여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보통주	2026년 3월 27일	19,794,079	-	-
3.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보통주	2026년 3월 27일	9.4%	-	-

라. 예정된 보유 기간

- 임직원 보상 제도 운영에 따라 자기주식의 969,896주를 2036년 3월까지 보유하며 처분 예정임.
-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2031년 3월까지 자기주식의 1,092,841주를 보유하며, 처분 예정임.

마. 예정된 처분 시기

- 자기주식의 969,896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이 달성되는 2036년 3월까지 보유하며 처분 예정임.
- 자기주식 1,092,841주는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2031년 3월까지 보유하며 처분 예정임.
- 처분 예정시점까지 처분되지 아니한 자기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예정임.

바. 기타 참고사항

- 당사는 위 자기주식보유 및 처분 계획과는 별도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매년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즉시 소각할 예정임.

<첨부서류>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 사본(본인서명 / 전자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 미성년자 위임 시 보호자 본인이 대리하여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각 1부
- ** 해외 거주 개인의 경우 해외 소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의 동일인 증명서 제출 또는 여권 사본 1부
-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